

영등포구의회
제20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9. 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8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('17.5.30.시행)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및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자동 심장충격기로 개정

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
나.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

-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(안 제4조)

- 자동제세동기 관리(안 제6조)

다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(안 제5조, 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및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에서의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(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)와 안 제6조(관리)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으며,
 - 안 제5조, 안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중복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및 구민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 할 것 사료되며,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참 고 자 료

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제16조(재정 지원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 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9.6.9., 2011.3.8., 2011.8.4., 2012.2.1., 2016.3.29., 2016.5.29.>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2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
3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
4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
5. 「선박법」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

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·폐기·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신설 2016.12.2.>

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5.14., 2016.12.2.>

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5.14., 2016.12.2.>

[본조신설 2007.12.14.]

[제목개정 2012.5.14.]

[시행일 : 2018.5.30.] 제47조의2제1항

[시행일 : 2018.5.30.] 제47조의2제2항

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38조의3(응급장비의 관리)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1. 매월 1회 이상의 점검

2. 응급장비 사용교육

3.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·비치

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15.8.19.>

③ 그 밖에 응급장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0.3.19.>

[본조신설 2008.6.13.]